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301호 2017. 9. 25(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8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0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공고 제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2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85-54, -55, -56번지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소염도 공원	소공원	서구 가좌동 585-55번지	-	증)1,268	1,268	-	일반공업지역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소염도 공원	· 소공원 신설 · 위치: 가좌동 585-55번지 · 면적: 1,268㎡	·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신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	서구 가좌동 585-65번지	-	증)710	710	-	일반공업지역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	· 주차장 신설 · 위치: 가좌동 585-65번지 · 면적: 710㎡	·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 시설	-	서구 가좌동 585-54번지	-	증)564.1	564.1	-	일반공업지역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문화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	· 문화시설 신설 · 위치: 가좌동 585-54번지 · 면적: 564.1㎡	·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관련 종사자 및 이용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시설 신설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12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 747 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09. 2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7-09-2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72-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47 (불로동, 제일프라자)	2009-07-10	검대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43-12	인천광역시 서구 마중로 153 (오류동, 반도실업)	2012-10-25	"나가서 맞이하다" 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26-12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17번길 19-1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06-3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92번길 12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6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27번길 21 (연희동)	2009-09-22	간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9-42, 129-54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48번길 23-1 (가좌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294-4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53번길 6 (가정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우원빌딩)	2009-07-10	봉오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5-5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 16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3-15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안길 17 (금곡동)	2008-12-31	완정로228번길의 안쪽으로분기되어있는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23-26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안길 19 (금곡동)	2008-12-31	완정로228번길의 안쪽으로분기되어있는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3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30 (당하동)	2008-12-3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26-22	인천광역시 서구 을도로107번길 8 (가정동)	2009-09-22	을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226-4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07번길 10 (마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00-1	인천광역시 서구 증봉대로586번길 9-4 (연희동, 쓰리엠타워)	2011-06-30	증봉대로 시작점부터 약5860m 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로 주민의견 반영	
1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2-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22-1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08-9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11번안길 2 (신현동)	2012-10-25	새오개로111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35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7번안길 31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7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24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7번안길 32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7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47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8번길 8 (경서동, 다은하우스)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5-80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1번길 51 (석남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2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9.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
 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3호선) : 서구 시천동 172-9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57	중로2-135 시천동 172-9	시천동 167	일반 도로	-	인고 2005-48호 (2005.03.)	
변경	소로	3	3	6	국지도로	92	중로2-135 시천동 172-9	시천동 173-1	일반 도로	-	인고 2005-48 (2005.03.)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3	소로 3-3	◦선형 연장 - 연장(L) : 57m → 92m 증) 35m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형여건, 토지 보상 등을 고려한 도로선형 변경을 통하여 주민 편의 증대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128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대행개시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사업대행자의 지정 등)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사업대행개시결정 등)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법인명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89, 상가2층(석남동, 롯데우람아파트)
- 대표자
 - 성명 : 조천휘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89, 3층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 면적 : 15,244.5m²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9년 10월
- 준공예정일 : 2022년 6월

5. 대행개시결정일 : 2017년 9월 25일

6. 사업대행자

- 사업대행자 : (주)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성표
-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삼성동, 아셈타워)

7. 대행사항

- 1) 시공사 선정·변경 또는 기존 도급계약 변경
- 2) 설계·감리자 선정·변경 또는 기존 용역계약 변경
- 3) 사업시행계획 수립 또는 변경
- 4)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변경
- 5)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및 국·공유지 취득
- 6) 조합원 및 일반 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대금 등 자금수납·관리
- 7) 준공인가 신청
- 8) 이전고시
- 9) 신탁재산관리
- 10)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의무
(단, 사업대행개시 결정에서 정하여진 대행사항에 한함)

8. 기타사항

사업대행자는 대행사항(본문 제7항)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3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입법취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
-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상위 법률과 중복된, s 내용 정비(안 제2조)
- 기금의 용도 신설 및 정비(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도시재생경관과, 전화 560-4182, 팩스 560-27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
-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상위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안 제2조)
- 기금의 용도 신설 및 정비(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를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 발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영관리)”를 “(기금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금고나”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

제12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관계 규정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서구</u> <u>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u> <u>조례</u>	<u>인천광역시 서구</u> <u>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u> <u>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 제6조의2에 따라 <u>광고물 등의 정비</u> 를 통해 <u>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u>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u>옥외광고정비기금</u> 을 설치하고, <u>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u>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 제6조의2- <u>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u> 을 ----- <u>옥외광고발전기금</u> 을 설치하고, <u>운용 및 관리</u> ----- -----
제2조 (기금의 재원) <u>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u> (이하 “ <u>기금</u>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u>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u> (이하 “ <u>기금</u> ”이라 한다)은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u>옥외광고사업 수익금</u> 중 <u>인천광역시 서구</u> (이하 “ <u>구</u> ”라 한다)로 배분되는 <u>수익금</u>	
2. <u>법 제17조</u> 에 따른 <u>수수료</u>	
3. <u>법 제20조</u> 에 따른 <u>과태료</u>	
4. <u>법 제10조의3</u> 에 따른 <u>이행강</u>	

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
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
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생략)

5. (생략)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
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② (생략)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생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

-----.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삭제>

2. (현행 제4호와 같음)

3.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

략)

② 기금은 구급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⑤ (생략)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과 같음)

②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나 -----
-----.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 옥외광고발전기금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1. 2. (현행과 같음)

3. -----
----- 회
의에 부치는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회의를 시작-----
-----.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 -----

<p>원을 둔다.</p> <p>1. <u>기금운용관 : 도시관리국장</u></p> <p>2. <u>기금출납원 : 경관관리담당</u></p> <p>② (생략)</p> <p>제12조 (<u>관계규정의 준용 등</u>)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u>「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u> <u>칙을 준용한다.</u></p>	<p>-----.</p> <p>1. <u>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u> <u>과장</u></p> <p>2. <u>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 (<u>관계 규정의 준용 등</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u> <u>규정-----.</u></p>
---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 ○ 같은 법 부칙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726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7-130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7.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m ²)				위 치	면 적(m ²)	
A-2	34	5	479.3		A-2	34	5-1	234.9	
							5-2	244.4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2)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7-5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 용어정의 변경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로 변경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로 명칭 변경
-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참조 : 건강증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39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 전화/팩스 : 032-560-5062/ 032-560-2803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 용어정의 변경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보건관련”을 “정신건강증진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해소”를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해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같은 호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주의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에서 규정한”을 “제4조에 따라”로, “없다.”를 “없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없다.”를 “없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필요-----.</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p> <p>2.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p> <p>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p>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 --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p>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연구
2. ~ 4. (생략)
5.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6. (생략)
7. 정신질환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해소 홍보 사업
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
-----.

1. 정신건강증진관련 -----

--
2. ~ 4. (현행과 같음)
5. ----- 정신건강증진사업-----

6. (현행과 같음)
7. ----- 예방·정신건강증진·편견 해소 -----
8. -----

-----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
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
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
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
야 한다.

1. (생략)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조-----.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
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
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
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
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

-----.

1. (현행과 같음)

2. ----- 관련 분야-----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3. 4. (생략)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
강증진센터 운영·관리에 있
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
을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3. 4.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자의 의무) -----
정신건강복지센터-----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
강복지센터 -----
----- 주의
의무

2. -----
- 제4조에 따라 -----

----- 없음

3. ----- 관계 법령 -----

----- 이행

4. ----- 정신건강복지센터--

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 시행

5. ----- 정신건강복지센터-----

없음

6. -----
----- 그 밖의 -----

----- 배상

제9조(시설의 운영)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

<p>장부 및 서류 등을 <u>년 2회</u> 이상 점검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p>	<p>----- <u>연</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시행규칙) ----- - <u>필요</u>----- -----.</p>
---	--

○ **관계법령 발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